

## <2026년 대비 민법중급강의 계획서>

기간 : 2025년 5월 26일 ~ 7월 14일(35회)

시간 : (오전) 9:10 ~ 12:50

교재 : 포인트민법, 포인트OX지문집

<기본서> 포인트민법(26년대비 개정판)

<객관식> 포인트민법 OX지문집(26년대비판)

1. 이제 기본강의가 끝나고 중급강의가 시작됩니다. 기본강의 때에는 일단 민법의 전체를 한 번 보고 이해를 위주로 학습을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출제 가능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여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본강의 때도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민법이 어려운 이유는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험생 여러분들이 중급강의에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이 방대한 분량의 민법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만 선별하여 최대한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분량을 압축하는 대신 압축된 분량만큼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언제나 꺼내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까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부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민법 공부의 뼈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중급강의의 목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민법의 뼈대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번 중급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조문이나 판례에 없는 내용, 판례가 있더라도 너무 지엽적인 내용(시험과 무관한 부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대신 수업시간에 다루어진 내용만이라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급강의에서 뼈대를 잘 만들어 놓으면 살을 붙이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중급강의 이후에 두꺼운 객관식 문제집을 풀고 기본서의 회독 수를 늘려가면서 살을 붙여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뼈대가 잘 잡혀있으면 살을 붙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뼈대가 잘 잡혀있지 않으면 시험장에 들어가갈 때까지 알아도 아는 게 아닌 상태로 들어가서 이 지문 저 지문 헛갈리다가 불합격의 쓴 맛을 보게 됩니다.

2. 예습은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지만, 복습은 반드시 해당 진도만큼 밀리지 않고 매일 꾸준히 해내셔야 합니다. 수업을 듣고, 기본서를 정독하고, 해당 진도의 기출문제까지 푸셔야 합니다. 교재만 평면적으로 읽는 것보다 강의를 듣고 학습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기출문제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중급강의에서도 기본강의와 마찬가지로 포인트민법 OX지문집을 다음 시간 진도 나가기 전에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 조문은 민법의 기본입니다. 1차 시험 지문의 80% 이상이 판례에서 출제되지만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조문으로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판례를 쌓아나가야 흔들리지 않는 민법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와르르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기본서에도 대부분의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만 기본서의 내용에 파묻혀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조문집을 따로 프린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집은 수업시간에는 물론이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4. 이번 중급강의에서도 친절한 설명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민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도표]

회차	날 짜	범 위
<b>제1편 민법총칙</b>		
1	5월 26일	제1장 민법일반 ~ 제2장 권리·의무(법률관계)
2	5월 27일	제3장 권리의 주체 I. 권리능력의 의의 ~ IX. 법인의 설립
3	5월 28일	제3장 권리의 주체 중 X. 재단법인 ~ 제4장 권리의 객체
4	5월 29일	제5장 권리의 변동 중 I. 권리의 변동 서설 ~ VII. 불공정한법률행위(폭리행위)
5	5월 30일	제5장 권리의 변동 중 VIII. 비진의표시 ~ XII.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6	6월 2일	제6장 대리
7	6월 3일	제7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제8장 조건·기한
8	6월 4일	제9장 기간 ~ 제10장 소멸시효 중 IV. 소멸시효의 중단
9	6월 5일	제10장 소멸시효 중 V. 소멸시효의 정지 ~ VIII.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b>제2편 물권법</b>		
10	6월 9일	제1장 물권법 일반 ~ 제3장 부동산물권의 변동 중 V.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1	6월 10일	제3장 부동산물권의 변동 중 VI. 등기의 효력 ~ 제6장 점유권 중 II. 점유의 관념화 현상
12	6월 11일	제6장 점유권 중 III. 점유의 태양(모습) ~ 제7장 소유권 중 III. 상린관계
13	6월 12일	제7장 소유권 중 IV. 취득시효 ~ VII.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4	6월 13일	제7장 소유권 중 VIII. 공동소유 ~ IX. 명의신탁
15	6월 16일	제7장 소유권 중 IX. 명의신탁 ~ 제8장 지상권
16	6월 17일	제9장 지역권 ~ 제12장 유치권
17	6월 18일	제13장 질권 중 I. 총설 ~ 제14장 저당권 중 III. 유저당계약
18	6월 19일	제14장 저당권 중 IV. 법정지상권 ~ X. 공동저당
19	6월 20일	제14장 저당권 중 XI.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제15장 비전형담보물권

<b>제3편 채권총칙</b>		
20	6월 23일	제1장 채권법 일반 ~ 제3장 채권의 효력 중 Ⅲ.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
21	6월 24일	제3장 채권의 효력 중 Ⅳ. 이행불능 ~ X I. 채권자지체(수령지체)
22	6월 25일	제3장 채권의 효력 중 X II. 책임재산보전의 일반론 ~ XIV. 채권자취소권
23	6월 26일	제3장 채권의 효력 중 XIV. 채권자취소권 ~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중 Ⅳ. 부진정연대채무
24	6월 27일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중 V. 보증채무 ~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중 I. 채권양도
25	6월 30일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중 Ⅱ. 면책적 채무인수 ~ 제6장 채권의 소멸 중 Ⅳ. 변제충당
26	7월 1일	제6장 채권의 소멸 중 V. 변제자대위 ~ VIII. 상계
27	7월 2일	제6장 채권의 소멸 중 VIII. 상계 ~ XI. 혼동

<b>제4편 채권각칙</b>		
28	7월 3일	제1장 계약총칙 중 제1절 계약의 성립 ~ 제2절 계약의 효력
29	7월 4일	제1장 계약총칙 중 제3절 계약의 소멸(해제.해지)
30	7월 7일	제2장 계약각칙 중 제1절 증여 ~ 제2절 매매
31	7월 8일	제2장 계약각칙 중 제3절 교환 ~ 제6절 임대차
32	7월 9일	제2장 계약각칙 중 제7절 고용 ~ 제9절 여행계약
33	7월 10일	제2장 계약각칙 중 제10절 현상광고 ~ 제15절 화해
34	7월 11일	제4장 사무관리 ~ 제5장 부당이득
35	7월 14일	제5장 불법행위

※ 위 진도표는 일응의 기준으로 진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